



##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운영 규정

규정번호	3-2-4
제정일자	2011.11.21
개정일자	2024.4.15
책임부서/팀·계	평생교육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은 정규 학위과정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인, 학생, 동문 혹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과정 일체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 이 과정의 개설·운영 업무는 평생교육원이 담당한다.

### 제2장 학습연한·교육과정·이수평가 및 수료

**제4조(교육과정)** 교육원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반인의 평생교육 및 자질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교육과정과 특별 교육과정을 둔다.

**제5조(정원)** 교육원의 학습정원은 4,00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 시기)** 각 과정의 입학 시기는 교육생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또는 방학중에 실시한다.

**제9조(등록 시기)** 교육원의 등록 시기는 각 교육 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10조(선발방법)** 교육원에서 학습을 희망하는 자는 본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1조(학습 비 및 반환)** ① 교육원의 학습자는 각 교육과정별 소정의 학습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 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준용하여 <별지1>에 따라 반환이다. <개정 2017.4.14.>

③ 학비감면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

**제12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학비감면 및 장학금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별지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7.4.14.>

**제13조(학습연한)** 교육과정의 학습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이 학습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설치과정)** 이 과정 개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제15조(과목이수 평가)** 교육원의 각 과정별 과목 이수 평가는 60% 이상 이수한자로 한다.

**제16조(수료)** 교육원은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3장 직제 및 재정

**제17조(직제)** 교육원에는 원장,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두며, 각 교육 과정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8조(구성)** 교육원은 각 과정별로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운영한다.

**제19조(재정)** 교육원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와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4장 포상과 징계

**제20조(포상)** 수강 기간 중 수업 참여도가 우수하거나 수강 시 교육과정 발전에 이바지한 수강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교육원은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습 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 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 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0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0이 지난후부터 1/20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0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로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2>

학비감면 및 장학금 기준<2024.4.15. 개정>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최고 경영자 과정	<p>1등급 : 교육비 전액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발전(평생교육원)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li> <li>② 공공기관 기관장 등 그에 준하는 자</li> </ul> <p>2등급 : 교육비 2/3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발전(평생교육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li> <li>② 언론 및 공공기관 등 그에 준하는 자</li> </ul> <p>3등급 : 교육비 1/2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발전(평생교육원)에 공로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li> <li>②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 그에 준하는 자</li> </ul> <p>4등급 : 교육비 1/3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발전(평생교육원)에 공로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li> <li>② 최고경영자과정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 되는 자</li> <li>③ 최고경영자과정 가족입학 및 원우 추천자</li> </ul>	등급별 학비감면
기타 일반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 1/2 감면</li> <li>2. 본교 재학생 및 동문 : 1/2 감면</li> <li>3. 동일인 3개 과정 이상을 수강하는자: 유리한 한 과목 1/3감면</li> <li>4. 동일한 1개 과정을 재수강하는 자 : 해당 과정 1/2 감면</li> <li>5. 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 및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li> </ol>	특전 및 감면혜택